[서식 예] 대여금청구의 소(변제기 없고, 이자약정 있는 경우)



소 장

원 고 ○○○ (주민등록번호)
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(우편번호)
전화·휴대폰번호: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 고 ◇◇◇ (주민등록번호) 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(우편번호) 전화·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대여금청구의 소

청 구 취 지

- 1. 피고는 원고에게 ○○○원 및 이에 대한 20○○. ○○. ○○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-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- 3.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- 1. 원고와 피고는 같은 고향의 선 · 후배 관계에 있었습니다.
- 2. 피고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조그마한 체인점을 개설하는데 자금이 모자란 다면서 사정이 어려운 원고에게 찾아와 돈을 빌려달라고 사정을 하여, 마침 적금도 만기가 되었고 체인점에 대한 인식도 좋아 피고에게 연 5%의 이자를 지급 받기로 하고 20○○. ○. ○.에 금 ○○○원을 빌려주었습니다.
- 3. 피고는 평생 은인으로 생각하겠다고 하면서 위 금액을 빌려가 체인점을 차리고 영업을 시작하자 하루가 다르게 영업이 번창하기 시작하였습니다. 이렇게 되자

피고는 기일의 어김이 없이 이자를 보내 왔습니다. 원고도 특별히 돈이 필⁸ 사정은 아니었으므로 변제의 최고 없이 이자로만 만족을 하면서 언젠가는 를 하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.

- 4. 그 뒤 원고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피고에게 찾아가 빌려 간 돈을 갚아 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는 정색을 하면서 갚으면 될 것 아니냐면서 오히려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원고를 무안하게 하였으므로, 원고는 하도 괘씸하여 법률상담소에서 상담을 한 뒤 변제의 최고를 하는 통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20○○. ○. ○.에 송달하자 피고는 기분이 나쁘다면서 아직까지 위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.
- 5.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대여금 금○○○원 및 이에 대해 20○○. ○○. ○
 ○.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이율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%의 이자 및 지연손해 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청구를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.

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

차용증

1. 갑 제2호증

통고서

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

각 1통

1. 소장부본

1통

1. 송달료납부서

1통

20 O O O O O (서명 또는 날인)

관할법원	※ 아래(1)참조	소멸시효	○○년(□ 소멸시효일람표
제출부수	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		
비 용	・인지액 : ○○○원(☞산정방법) ※ 아래(2)참조 ・송달료 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		
불복절차 및 기 간	・항소(민사소송법 제390조) ・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(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)		
기 타	·채무이행의 기한이 없 로부터 지체책임이 있		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 '조 제2항).

※ (1) 관 할

- 1. 소(訴)는 피고의 보통재판적(普通裁判籍)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,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,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,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.
- 2.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.
- 3.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(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, 그 밖의 채무 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: 민법 제467 조 제1항, 제2항)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.

※ (2) 인 지

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. 다만,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·직불카드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,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(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).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소의 제기 >>이행의 소

